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2 - 61호

「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」 제17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제35조제3항제14호 나목에 따라 “우체국금융사업 위탁법인 및 위탁업무” 지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2년 11월 8일

우 정 사 업 본 부 장

## 우체국금융사업 위탁법인 및 위탁업무지정

1. 위탁법인 : 재단법인 우체국금융개발원

2. 위탁업무

가. 우체국금융사업과 관련된 상품의 개발·판매 및 그 부대사업

나. 우체국보험 청약심사·계약관리 및 보험금 지급심사

다. 우체국금융사업과 관련된 교육, 홍보 및 문화센터 운영

라. 우체국금융사업과 관련된 전자금융서비스·전산시스템의 개발·운영 및 그 부대사업

마. 우체국금융사업과 관련된 시장의 분석·연구

바. 우체국금융 고객(콜)센터 운영 및 고객관계관리 활동 지원

사. 우체국 예금자금 및 보험적립금의 운용 지원

아. 우체국금융 위험관리업무 지원

자. 우체국금융에 속한 부동산 관리·운영

차. 우체국금융사업과 관련된 공익사업 운영

카. 우체국금융사업과 관련된 분쟁해결 및 결산·회계 업무의 지원

타. 우체국금융사업과 관련된 제도개선의 연구 및 국제협력

파. 그 밖에 가호부터 타호까지와 관련된 부대사업

### 부 칙

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, 우정사업본부고시 제2007-3호(우체국금융사업 위탁법인 및 위탁업무지정, 2007. 3. 2)는 폐지한다.